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결정사안】

차풍길이 아버지의 초청으로 도일, 1976. 6. 중순~1979. 3. 중순 동안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2차례 취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들인 위 회사의 사장과 직원 요시무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이들과 회합하고, 조총련을 찬양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1982. 8. 7.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66여 일간 불법구금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범죄사실이 허위 조작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안기부가 차풍길이 조총련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회합하는 등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보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2. 안기부 수사관들은 차풍길을 1982. 8. 7. 연행하여 10. 1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6여 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한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차풍길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차풍길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호소를 묵살하고 자백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인권옹호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차풍길은 공판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하였으므로 간첩행위 및 조총련에 대한 고무 찬양동조 발언 등의 사실은 조작이라고 호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물적 증거가 없어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기각하는 위법을 범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전 문】

【사 건】 라-5539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

【신청인】 차풍길

【결정일】 2007. 6.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의 요지

차풍길은 전남 장성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아버지의 초청으로 독일, 1976. 6. 중순~1979. 3. 중순 동안 일본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향부흥업¹⁾에 2차레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82. 8. 7. 차풍길(당시 38세)을 연행하여 조사한 다음 차풍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인 위 회사의 사장 ○○○○○²⁾와 직원 요시무라³⁾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이들과 회합하고, 조총련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이어 검찰이 1982. 11. 15. 기소하여 1983. 3. 3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차풍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차풍길은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각각 상소를 기각하였다.

1) 수사기록에 의하면, 도쿄 오다쿠 하가시코지야(東京都 大田區 東糶谷) 6-6-10 소재임.

2) 일본명 ○○○○, 58세, 한국명 미상, 제주도 출신 총련계 귀화일본인이나 동인에 대해 국정원의「조총련인물록」에 존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존안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

3) 일본명 吉村, 수사기록에 의하면, 한국명 이○○, 33세, 전 총련체육연합회 회장 이○○(일명, 이○○)의 장남이며, ‘조청(조선 청년동맹)’오다쿠(大田區)지부위원장, 총련동경지부 정치부 지도원 등으로 대남 공작활동을 하면서 오다쿠지역을 공작사업지로 담당하고 있는 자이나 동인에 대해 국정원의「조총련인물록」에 존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존안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



2. 범죄사실 요지

차풍길은 1976. 6. 중순~1979. 3. 28.까지 2회에 걸쳐 일본의 향부흥업에 근무하였는데,

1. 1976. 12.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 요시무라에게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① 12. 12. 한국으로 잠입하고, ② 1978. 1. 장성을 영천리 869 소재 김정신의 집에서 동월 26일자 한국일보 「1978년도의 경제지표」에 관한 기사, 동년 2. 중순 박석중의 신신세탁소에서 경향신문 「템스퍼리트 '78」에 관한 기사, 동년 3. 하순 김정신의 집에서 한국일보 「대졸초임 17만원」에 관한 기사 등을 탐지 수집하고,

2. 탐지 수집된 위 내용을 보고할 목적으로 1978. 9. 29. 도일하여, ① 위 탐지 수집한 내용을 보고하고, ② 1978. 12. 중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동인들이 한국정세에 대해 비방하는 의견에 동조하고, 1979. 1. 초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조총련은 조국 통일과 남조선인민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교양을 받고 이에 동조하고, 동년 3. 중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각 회합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민심 동향 등을 탐지 수집하여 다음 도일시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① 1979. 1. 28. 한국에 잠입하고, ② 1979. 6. 24.~1980. 6. 경까지 차풍길의 양복점을 출입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사단 규모, 장비 동향 등을 탐지 수집하고, 1979. 8. 중순 한국일보 「YH여자근로자 농성」기사, 경향신문 「사북사건」기사 등 각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4. 1979. 4. 1. 위 박석중의 집에서 조총련은 조선대학을 세워 무상교육을 실시, 민단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단합이 잘 된다는 등으로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하고,

5. 1982. 7. 3. 경 일반여권을 발급받고, 도일절차 및 회합준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을 예비하였다는 것이다.

위 잠입의 점은 각각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1412호) 제6조제4항을, 간첩의 점은 구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을, 각 회합의 점은 각각 반공법 제5조제1항을, 조총련 찬양고무 동조의 점은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1412호) 제4조제1항을, 회합예비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적용하였다.

신청인 차풍길은 2006. 10. 9. 진실화해위원회에 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 사항

1. 불법구금 여부

차풍길은 1982. 8. 7. 안기부 수사관 2명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 1982. 10. 12. 구속되기 까지 66여 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가혹행위 여부

안기부 수사관들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차풍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것이다.

3. 간첩 및 찬양고무 여부

차풍길은 조총련 대남공작원과 회합, 그들의 지령에 따라 간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III.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등을 의미하며, 확정판결 사건인 경우에는 기본법상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확인된 담당 수사관들의 불법구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



당하므로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7. 5. 15.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검토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 기록,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송보도 등 참고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피해자·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1. 자료조사

- 서울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10권 총 2,600여 쪽
 - 안기부의 수사배경 및 과정, 피해자의 안기부,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 안기부 및 검찰, 공판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번복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담당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 담당수사관들을 통해 당시 가혹행위 및 진술서 조작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였다.

2. 진술청취

피해자인 신청인, 참고인 및 증인 8명, 수사관 6명⁴⁾에 대해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임의성 여부, 상반된 증언 진술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4) 수사기록과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된 수사관은 성○○, 이○○, 한○○, 천○○, 김○○, 최○○ 등 총 6명이다. 그러나 국정원에 인적조화를 한 결과, 소재가 파악된 수사관은 성○○, 이○○, 한○○, 최○○ 등 4명이다. 이들 중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응한 수사관은 성○○, 한○○뿐이다.

V. 조사결과

1. 수사과정

가. 수사착수 배경

안기부 해외파트에서는 차풍길이 총련계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위치에 있는 간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보고를 받은 후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⁵⁾

나. 안기부의 수사

안기부는 차풍길을 남산 분실로 연행, 1982. 8. 9. 1회 자술서 작성을 시작으로, 8. 16. 2회, 8. 22. 3회, 8. 27. 4회, 9. 5. 5회, 9. 11. 6회, 9. 17. 7회, 9. 24. 8회 등 총 8회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9. 27. 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9. 28. 2회 피의자신문조서, 9. 29. 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2회 진술서, 10. 4. 3회 진술서, 10. 5. 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5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10. 18. 검찰에 송치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

서울지방검찰청은 10. 19.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작으로, 11. 2. 2회 피의자신문조서, 11. 3. 3회·4회 피의자신문조서, 11. 4. 1회 자술서, 11. 6. 5회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자술서, 11. 12. 6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회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차풍길은 자신의 혐의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 자백하여 조작되었다고 호소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위와 같이 조사를 진행한 후 1982. 11. 15. 기소(검사 이종찬)하였다.

2. 재판과정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위 기소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2. 20. 1차 공판, 1983. 1. 10. 2차 공판, 1. 24. 3차 공판, 2. 14. 4차 공판, 2. 28. 5차 공판, 3. 14. 6차 공판, 3. 28. 7차 공판을 거쳐, 3. 31.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재판장 김성만, 판사 조대현 김기동)하였다.

5) 2007. 5. 18. 진실화해위 성○○(前안기부수사관) 진술청취.



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983. 6. 15. 1차 공판을 시작으로 8. 11. 개정된 5차 공판에서 원심대로 선고(재판장 이영모 판사 김창수 김재진)하였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1983. 11. 8. 상고를 기각(재판장 정태균, 대법원 판사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하였다.

3.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구금 여부

1) 피해자 진술

차풍길은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982. 8. 7. 안기부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와 영장 없이 남산 안기부로 연행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12. 20. 1심 1차 재판 후 처음으로 가족과 변호사를 면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차풍길의 처 박명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82. 8. 7. 남편이 연행된 후 8. 12. 경 ‘남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내용의 발신자 미기재의 엽서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안기부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 사진, 아이들이 오려났던 신문, 고장난 라이터 등을 압수해갔고, 두 달 뒤 저녁 뉴스에서 남편이 고정간첩으로 활동,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기사를 봤고, 며칠 후 검사실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내사 요망’ 엽서를 수신한 바 있으며, 4개월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남편과 첫 면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82. 12. 20. 1차 공판시 차풍길에 대한 접견금지 해제신청을 하여 차풍길과 첫 면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관 진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담당수사관 성○○은 “임의동행으로 차풍길을 연행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하였으며, 66여 일이 경과된 것은 현재 시각에서 보면 불법감금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는 관행이었다”고 진술하

였다.

4) 소결

1982. 8. 9. 작성한 1회 자술서의 분량이 100쪽이 넘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수사관도 장기간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차풍길이 1982. 8. 7. 안기부에 연행되어 10. 1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6여 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제124조)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가혹행위 여부

1) 피해자 진술

차풍길은 1심 공판에서, 안기부에서 66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조사받았는지, 사전에 신문과 미군부대 내용 등을 알려주고 이를 외우고 쓰라고 하여 자술서 등을 썼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안기부 직원이 구치소에 와서 구타와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진술하였는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 “모두 사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차풍길은 위 항소이유서에서 고문·가혹행위 등 안기부 조사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⁶⁾

“1982. 8. 7. 오전 안기부 수사관들이 남산 안기부로 연행하여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기더니 7~8명의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해 정신을 잃었다.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하체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상체는 바닥에 엎드려 뺨쳐를 시키고는 옆구리를 차서 넘어지면 짓밟았다.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관절마디를 꺾고, 머리채를 잡아서 책상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연행된 지 20여 일 지나서 YH사건, 사북사건, 100억불 수출달성 등의 기사, 일본에 가서 했던 일, 동두천에서 양복점을 운영할 당시 미군부대 주변 상황 등을 외우게 하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5일간 문답형식으로 내용을 주지시켰다.”

“검찰 조사 때 범죄사실은 모두 허위 자백하여 조작된 것이며, 관광비자로 도입하여 취업한 죄밖에 없다며 재수사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검사가 이

6) 서울고법에 제출한 차풍길의 항소이유서.(1983. 5. 24.과 6. 10.)



를 목살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대기하던 안기부 수사관이 구치소 지하실로 끌고 가 구둣발로 발등을 짓이키며,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차풍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⁷⁾

“고문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자술서 날짜는 당시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술서를 먼저 작성하였고, 구치소 들어가기 전 3, 4일 동안은 때리지도 않았고 상처가 아물도록 몸을 편히 쉬게 해줬다. 사전에 신문과 미군부대 내용 등을 제시하며 외우고 쓰라고 하여 이러한 과정을 여러 날 반복한 다음 자술서 등을 쓴 것이다.”

“큰 주전자와 긴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의자에 묶고 한 사람은 뒤에서 붙잡고 한 사람은 얼굴을 붙잡고 입에다 물을 부었다. 숨을 못 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였다. 처음에 있었던 방은 바닥에 얇은 카펫이 깔린 곳으로 공간도 넓었는데 의자만 하나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같이 물이 흘러도 닦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수사관이 검찰에 가서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번 돈에 대해 복리이자로 계산해 재산을 몰수하고, 어린 자식들도 안기부로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검찰 조사 때 수사관이 옆방에서 항시 대기, 조서 작성시에는 입회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차 공판에서 변론연기, 접견금지 해제요구 신청 후 처음으로 면회하였는데, 차풍길은 변호인을 보자마자 안기부와 검찰 조사에서 고문·가혹행위로 인해 간첩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당시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차풍길에게 외견상 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일관되게 주장하여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 자백한 것을 보니 강압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차풍길이 1심 공판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폭행 및 물고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점, 1심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가족은 물론 변호인의 접견도 금지된 상태에 있었던 점, 최초 자술서에서 수년 전

7) 차풍길 진술청취.(2007. 3. 27.)

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100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혹행위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가. 요시무라의 지령 여부

위 범죄사실에서 조총련 대남공작지도원인 요시무라로부터 지령을 받은 차풍길이 1976년부터 1981년에 걸쳐 간첩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인 바, 요시무라가 그 중심에 있다. 수사 기록상 요시무라는 한국명이 이○○으로, 전(前) 조총련체육연합회 회장 이○○의 장남이며, 조선청년동맹 동경 오다쿠(大田區)지부 위원장, 조총련 동경지부 정치부 지도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에 요시무라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즉, 요시무라가 조총련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 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차풍길의 안기부 및 검찰에서의 자백이 있다. 차풍길은 공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 차풍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조총련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만약에 향부흥업회사와 요시무라라는 사람이 조총련이었다면 절대 만나지도 않았고, 그 회사도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차풍길의 매형 전대량은 안기부에서 “1976. 12. 12. 차풍길이 귀국 후 집으로 찾아와 ‘일본에서 향부흥업이라는 쓰레기처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사장이 각별히 잘 해줘서 다음에 일본에 오면 다시 일할 것을 부탁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박석중(당시 38세, 세탁소 경영)은 안기부에서 “1978. 경 세탁소를 경영하는 본인의 집에 와서 차풍길이 종종 신문을 읽고 가는 경우가 있었고, 1979. 3. 경 일본에서 귀국하는 차풍길에게 카메라를 부탁하여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박석중은 1심 공판에서 “차풍길이 『타임스피리트 '78』에 관한 기사를 옮겨 적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김정신(당시 41세, 연탄판매업)은 안기부에서 “1971.~1979. 중반까지 한국일보를 보다



가 이후 전남일보를 보았다. 차풍길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고 신문도 자주 본 적이 있으나 신문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찬양고무 발언과 관련하여 오○○(당시 37세, 장성군 공무원)은 안기부에서 “차풍길이 자양회⁸⁾ 회원들에게 찬양고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며, 1심 공판에서 검사의 신문에는 “조총련과 민단이 분간이 안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람을 보아 분간이 안 간다는 뜻이다. 전체적 취지로 보아 조총련을 찬양하는 요지의 대답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에는 “그 당시는 조총련을 찬양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반복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당시 방영되던 조총련 관련 드라마를 보던 중 조총련을 고무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박석중은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그 때 차풍길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집에서 개최한 모임이라 처와 함께 음식을 나르며 회원들의 시중을 드느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 1982. 경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이 광주 안기부 사무실로 동행하여, 수사관이 차풍길의 조총련 발언을 물어 모른다고 하자, 3~4시간을 사무실에 앉혀 놓는 공포스러운 상황과 ‘제대로 안 하면 손 좀 봐줘야겠다’, ‘차풍길은 자양회 모임에서 당신들한테 조총련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썼는데 왜 못 들었다고 하느냐, 계속 모른다고 하면 차풍길이랑 같이 집어 처넣는다’며 협박을 했고, 차풍길이 썼다는 진술서를 읽어 주어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고 동의하고, 위 사무실에서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이후 자양회 회원 여러 명이 본인과 같은 일을 겪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차풍길이 구속된 후 검찰청에 불려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된다’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신도 안기부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차풍길의 조총련 찬양고무 발언 여부에 대해 모두 위 2명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⁹⁾에서는 “1982. 경 집으로 찾아온 안기부 수사관과 광주대공분실로 동행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차풍길은 자양회 모임에서 조총련 찬양발언 등을 말했다고 하던데 왜 모르냐’고 하여, ‘차풍길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거라’고 대답한 것이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조사실 옆방에서 신음소리

8) 마을 친목계 모임.

9) 2007. 5. 10. 전남 장성 장성읍사무소 <제3의 장소> 진술청취.

도 들렸고, 수사관들끼리 ‘몇 건이나 했냐’, ‘한 건도 못했다’ 등의 말을 들으며 공포감을 느꼈다. 이후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은 차풍길이 진술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식의 조사를 하였다. 검찰청 조사와 1심 재판의 증인출석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을 때 안기부 수사관들이 역으로 마중나와 동행하여 숙소도 정해주고 비용을 지불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생각했다. 당시 모임에는 장성경찰서 대공과 경찰 임형택 회원도 있었고, 본인도 연탄소매업을 하기 전에 경찰에서 일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차풍길이 조총련 고무 찬양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수상히 여겨 신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김광현(당시 38세, 장성군 공무원) 역시 안기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조총련 찬양고무 발언 여부에 대해 모두 위 3명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1982. 8. 경 직장인 장성군청으로 찾아온 수사관들과 광주대공분실로 동행하여 수사관이 차풍길이 썼다는 자필진술서를 읽어보라고 건네주었고, 모임에서 차풍길로부터 들은 얘기 등을 질문 받았으나 들은 바 없다고 했으며, 후에 다시 찾아온 수사관들이 재차 질문하여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오규현, 김정신, 박석종 등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서울로 상경했는데, 안기부 수사관들이 용산역까지 나와서 인솔, 여관으로 동행하여 숙박하는 등 감시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

전복안(당시 40세, 해남농촌지도소)은 2심 공판에서 차풍길로부터 조총련 찬양고무 발언을 들은 바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날 모임에서 차풍길이 조총련을 찬양하는 말을 하였다면 정보과 순경도 있고 하니 그 즉시 문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그 때는 조총련을 찬양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소결

차풍길에 대한 안기부 조서는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찰의 조서는 수사관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조총련 찬양고무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진술도 안기부 수사관들의 강압 내지 기망(欺罔)에 의한 것으로써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그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질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어 찬양고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반공법상 찬양고무 조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¹⁰⁾

결국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차풍길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안기부가 차풍길이 총련계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회합하는 등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보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장기간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1982. 8. 7. 차풍길을 연행하여 10. 1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6여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한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강압적 상태에서 차풍길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차풍길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호소를 외면하고, 안기부의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인권옹호를 하여야 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차풍길은 공판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하였으므로 간첩 행위 및 조총련 고무찬양 동조 발언 등은 조작이라고 호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

10) 헌법재판소 89헌가113(1990. 04. 02.) 참조.

법원 및 대법원이 각각 상소를 기각한 것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2. 권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자백에만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